제299회 임시회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사회적경제3법 제정 촉구 건의안 (이준형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준 형 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- □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준형의원입니다.
- 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
 25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신
 「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」에
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□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□ 사회적경제가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 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,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나 기본 원리도 아직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·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자사회적경제 3법1)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
건의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¹⁾ 사회적경제 3법이란 「사회적경제기본법」과 「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」, 「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지칭함.